

2024년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물류비) 추가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물류비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1월 15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제품 해외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해외 제품판로 확보 지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 지원
- 지원규모:** 6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 지원범위:** 2024년 1월 ~ 10월까지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수출 건 (신청일 기준 모든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원내용**

구분	세부사항	지원조건
국제특송	EMS(우체국), Fedex, DHL 등 국제특송 지원	<p>***수출신고필증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1월 ~ 10월까지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수출 건 인코텀즈 C, D, F* 조건 수출자 구분 A, B 물류비를 수출자가 직접 납부한 기업
포워딩업체** (해상, 항공 운송료)	국제운임, 국내·외 창고료, 국내·외 내륙운송료 등 물류비 전체 항목 지원	
지원조건 예시		

* **인코텀즈 F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포워딩업체 이용건만 제출
 ** 포워딩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목록에 운송·물류 등 관련 기재된 업체만 가능

- **지원금액: 기업당 연 1회 최대 300만원 지원(소요비용의 80% 지원)**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이상 현금 매칭 필수
 - ※ 예시) 지원금 300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은 75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375만원임
 - 부가세, 관세, 송금수수료 지원 제외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운송료 지원 제외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 본사 외 공장 등이 용인에 위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종된사업장 등록 등 증빙서류 필수 제출
 -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완료 기업
 - ※ 선착순 내에 신청하였다도,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해당하는 중소기업(별첨1 참조)
 - ※ 사업자등록증 내 용인 주소 확인

□ 제외대상

구분	내용
참여 제한	○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휴·폐업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서류 허위제출	○ 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부적합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중복 참여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는 '2024년 지원사업 안내문' 참고(별첨2)

신청 및 지원 가능 예시

해외물류비 지원을 타 기관에서 지원받았지만 **다른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으로 진흥원에 신청한 경우

예시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11111-11-111111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12345-12-123456A

신청 및 지원 불가 예시

해외물류비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후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로 진흥원에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일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세부내역이 다르더라도 지원 불가)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이므로 제외

예시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11111-11-111111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11111-11-111111A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선착순) 2024. 11. 15.(금) ~ 11. 28.(목) 12:00
(예산 소진 시 접수기간에 관계없이 마감)

- ※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선정 / 단, 지원조건 및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시 지원을 제외할 수 있음
- ※ 접속이 물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 단, 2024년 진흥원 지원사업은 최대 5개까지만 지원 가능(별첨2 참조)

- 접수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활용 온라인 접수(<https://ybs.ypa.or.kr/>)

①	②	③	④
용인기업 지원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상단의 '기업지원' 탭에서 '지원사업 공고' 클릭	화면 중간 '용인시산업진흥원' 클릭 후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에서 신청서 작성 및 기타서류 업로드 제출
 -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저장(스캔)하고 제출
 - ※ 미비서류 발생 시 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
 - ※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10MB 이상)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나누어 업로드
- 문의처: 수출지원팀 김민지 선임(☎031-323-4694)

4

지원금 지급 및 제출서류 안내

□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제출서류 및 중복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진흥원 → 기업)

□ 제출서류 목록(제출서류 누락 시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유의 요망)

구분	번호	서류명	참고사항	
신청 서류	1	완료보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협약서	진흥원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2	수출실적내역서	진흥원 양식(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3개월 이내 분	
	5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정산 서류	6	수출신고필증	유니패스에서 수출여부, B/L번호 등 확인	
	7	물류기업(업체) 인보이스	★ 유니패스에 등록된 B/L번호 표시 필수	
	8	B/L(해상)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유니패스에서 수출신고번호와 B/L번호 확인	
	9	납부증빙서류 - (카드)영수증 또는 송금(이체)확인증 등	인보이스와 이체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자료 모두 첨부 이체확인증으로 받는사람 계좌번호 확인	
	포워딩업체 이용 시 추가 제출			
	10	전자세금계산서	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 금액, 이체금액이 다를 경우 소명자료 모두 첨부	
	11	(포워딩업체)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 물류관련 내용 필수	
12	(포워딩업체)통장사본	기업 → 포워딩업체로 이체 시 계좌번호 확인용		

※ 정산서류는 증빙번호 별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단, 파일 용량이 큰 경우 나누어 제출 (예시, 증빙1-1, 증빙1-2)

※ 파일의 용량이 큰 경우(10MB 이상)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나누어 업로드

※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지원요건 미충족 및 지원서류 누락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시) A기업이 물류 10건에 대해서 정산서류 제출→서류검토 결과 4건이 서류 미비→4건에 대해서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착순 지원
-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완료 기업
- 용인시 소재 업체로서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기업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2. 2024년 지원사업 안내문. 끝.

[참고]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input type="checkbox"/> 부정한 방법(타기관 중복수혜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input type="checkbox"/>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지원기업 부도, 폐업, 대표자 사망 등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	면제	집행잔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2년	전액 환수
포기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부정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경고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복원	주의	해당없음
	○ 협약기간 내 사용금액 미복원	경고	해당금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종료이후 사업비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input type="checkbox"/> 사업 결과물 및 지출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 보고서 제출 등을 지체 또는 불응한 경우	경고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 중간점검, 완료평가 결과(물)에 따라 필요시 해당 금액 환수	경고	해당없음 (필요시환수)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 연간 경고 2회 = 참여제한 1년, * 연간 주의 2회 = 경고 1회<개정 2021.03.04.><개정 2023.03.30.>
※ 경고 및 주의누적은 당해연도에 한함
- * 참여제한 시작일은 진흥원의 제재조치 통보일로 함 <신설 2021.03.04.><개정 2023.03.30.>
- * 참여제한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적용함
- * 지원금 횡령, 편취, 유용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신설 2023.03.30.>
- * 제재 및 환수 사유가 확인된 시점에 2가지 이상 적용되는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제재 및 환수 기준을 적용 <신설 2023.03.30.> <개정 2024.01.0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20.>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2024년 지원사업 목록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사업화지원	인증·특허 지원	기업육성팀
2	사업화지원	지식재산 창출	기업육성팀
3	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육성팀
4	마케팅·판로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육성팀
5	사업화지원	ICT 제품화 지원	기업육성팀
6	마케팅·판로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기업육성팀
7	마케팅·판로지원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MAS)	기업육성팀
8	기술지원	반도체 소부장 R&D 지원	미래산업팀
9	기술지원	지역현안 문제해결(지역현안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미래산업팀
10	기술지원	지역현안 문제해결(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혁신 지원)	미래산업팀
11	사업화지원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지원	미래산업팀
12	소(상)공인지원	소공인 시제품 제작 지원	소공인육성팀
13	소(상)공인지원	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소공인육성팀
14	소(상)공인지원	소공인 온·오프마케팅 지원	소공인육성팀
15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소공인육성팀
16	소(상)공인지원	소공인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소공인육성팀
17	창업지원	창업지원센터 통합운영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지원	창업지원팀
18	창업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지원	창업지원팀
19	창업지원	창업 키움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팀
20	마케팅·판로지원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지사화)	수출지원팀
21	사업화지원	해외진출 종합지원(해외물류비)	수출지원팀
22	마케팅·판로지원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수출지원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가능(당해년도 기준)
- 당해년도 2천만 원 이상 지원사업(단일사업 기준)에 선정된 기업은 올해 진흥원의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사업에 **2회 이상 지원 불가** ※ 단, 일부사업 제외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서는 지원 제외됨
- 서류검토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 진흥원 내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별첨 참고)
 -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서류검토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 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 사업기간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기간 내 관외 지역으로 이전 혹은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 취소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미지급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지원 제외됨
 - ※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통관세금(관세), 은행 송금(이체) 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 ex) A제품을 목업 5개를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A제품의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첨]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유사사례 중심)

사업구분	사례유형	세부내용	중복여부
인증/ 특허출원	동일제품/동일인증	[A제품] KC인증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중복 O
	동일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인증	[A제품] KC인증 → 경기도 지원 GS인증 → 진흥원 지원	중복 X
	동일제품/상이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 경기도 지원 해외특허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인증	[A제품] ISO인증 → 용인시 지원 [B제품] ISO인증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특허출원	[A제품] 국내특허 → 용인시 지원 [B제품] 국내특허 → 진흥원 지원	중복 X
시제품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목업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PCB제조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금형 → 경기도 지원 [B제품] 금형 → 진흥원 지원	중복 X
마케팅	동일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중복 O
	동일제품/상이제작분야	[A제품] 카탈로그 제작 → 경기도 지원 리플렛 제작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제품/동일제작분야	[A제품] SNS광고 → 용인시 지원 [B제품] SNS광고 → 진흥원 지원	중복 X
해외물류비 지원*	동일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중복 O
	상이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A] → 경기도 지원 [수출신고번호 B] → 진흥원 지원	중복 X
지역현안	동일아이템/동일지원내용	[A아이템] 시제품 제작-용역비 → 창진원(진흥원 A팀) 지원 → 진흥원(진흥원 B팀) 지원	중복 O
	동일아이템/상이지원내용	[A아이템] 플랫폼 제작 -인건비, 광고비 등 → 창진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용역비 → 진흥원 지원	중복 X
	상이아이템/동일지원내용	[A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창진원 지원 [B아이템] 플랫폼 제작-광고비 → 진흥원 지원	중복 X

* 수출건수(수출신고번호) 기준으로 중복여부 판단

*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중복 기준 적용

* 중복지원 기준은 외부기관 뿐만 아니라 진흥원 내부사업 간에도 적용